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1가단102352 판결 [계약금반환청구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3. 1. 11 선고 2021나120061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1. 8. 18 선고 2021가단102352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(변경 전 : B 주식회사)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필로스, 담당변호사 김학민

피 고 C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율, 담당변호사 서경수

변론종결 2021. 7. 7.

판결선고 2021. 8. 18.

주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

피고는 원고에게 71,5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%의 비율에

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○ 원고는 2020. 4. 1. 피고와 원고가 운용 중인 파쇄시설의 터키수출에 대한 부대시설 제작관련 계약을 계약금액 650,000,000원(부가세 별도, 계약금 10% 65,000,000원 계약 후 선급이행증권 제출 후 지급, 중도금 80% 520,000,000원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월 기성청구, 잔금 10% 65,000,000원 검수 및 시운전 완료 후 지급), 공사기간 2020. 4. 1.부터 2020. 10. 31.까지로 정하여 체결하고(이하 '이 사건 계약'이라 한다), 2020. 4. 1. 피고에게 계약금 71,5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○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체결 후 15일 내에 피보증인 명의가 원고로 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고, 원고는 계약의 성격 및 금액,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(계약조건 제2조 제1항, 제6항).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는 피고가 계약의 이행에 대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을 수령하기 전에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제출해야 하고, 하자보증기산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계약완료 후 검사일 중 빠른 날로 하며, 원고는 계약의 성격 및 금액, 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제출의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면하게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다(계약조건 제10조 제1항, 제2항, 제11항). 그리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하자보증요청을 원고의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(계약조건 제14조 제2항 제2호).

○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가 체결하였는데 D는 2020. 8. 25. 사임하였다.

○ 원고의 전 대표이사 D는 피고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피고와 사이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계약이행증권을 면제했고 공사완료 후 계약이행증권을 제출받았다고 답변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 내지 3호증, 을 2호증(각 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원고는 먼저,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의 전 대표이사 D가 피고와 통모하여 가장하여 체결한 계약으로 송금한 금원을 빼돌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갑 4 내지 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원고는 다음으로, 피고가 이 사건 계약체결 후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,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일체의 채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며 지급한 금액 71,500,000원의 반환을 구한다. 살피건대,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의 경우 이 사건 계약 조건에 의하면 피고의 제출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, 원고가 그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실제로 원고의 전 대표자인 D가 공사완료 전에 계약이행증권을 면제했다고 밝히고 있는 이상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. 그리고

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의 경우 공사금액 전액 수령 후에 제출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미제출 또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기 어렵다. 그리고 피고가 공사대금 중 10%를 지급받은 상태에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하나 공사대금 중 중도금 80%는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월 기성청구를 하기로 한 이 사건 계약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일방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제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의 무효 또는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